

신혼부부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일정 및 장소

■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

-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는 사전 서류접수를 방문 예약제로 운영합니다.
- 사전 방문예약은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홈페이지(<https://gum.lynn.co.kr/>)로 예약 접수 가능하며,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.

| 구분 | 일시 | 장소 |
|---------|--|---|
| 서류제출 기한 | 2023.09.21(목) ~ 2023.09.25(월) [10:00 ~ 17:00] |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모델하우스 광주광역시 서구 마곡동 164-8번지 (대표번호 : 062-367-0010) |
| 제출 대상 |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| |
| 제출 방법 |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방문 접수(https://gum.lynn.co.kr/) | |
| 정당 계약일 | 2023.10.04(수) ~ 2023.10.06(금) [10:00 ~ 16:00] | |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[2023.09.01(금)]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
당첨자 대상별 구비서류 [2023.09.21(목) ~ 09.25(월), 총 5일간]

| 구분 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공통서류 | ○ | | 인감증명서 | 본인 | - 본인발급용에 한함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(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) |
| | ○ | | 인감도장 | - | - 인감증명서 상 도장 대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|
| | ○ | | 신분증 | 본인 |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) 등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- 연속 90일 초과 / 연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-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|
| | ○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-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지역 청약 시 복무기간 확인 | |
| 해외체류 단심부임 | | ○ | 단심부임 입증서류 | 본인 및 직계 존·비속 | -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번역공증 첨부 필수 |
| 신혼부부 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혼인신고일 확인("상세"로 발급) |
| 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배우자 | 등분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|
| | ○ | | 주민등록초본 | 직계존속 | -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 부양 확인 |
| | ○ | |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|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| -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|
| | ○ | | 소득증빙 서류 |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| - 본인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자료 |
| | | ○ |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| 본인(또는 배우자) | -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,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 외 불가) 제출 |
| | | ○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(또는 배우자) | - 입양의 경우 |
| | | ○ |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| 본인(또는 배우자) |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(임신중인 경우) |
| | ○ | 비사업자 확인각서 |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|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 | |
| | ○ | 부동산소유현황 | 본인 및 세대원 | - 부동산 소유자 ① 부동산소유현황, ②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입증서류) - 부동산 미소유자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내역 없음 화면내용 출력,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) | |
| 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 | ○ | | 위임장 | 본인 | - 견본주택 비치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) |
| | ○ |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(청약자) | - 본인발급용 확인(용도: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|
| | ○ | | 대리인 신분증 | 대리인 | - 대리인 본인 확인 |
| | ○ | | 대리인 도장 | 대리인 | - 서명가능 |
|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| | | | 해당자 |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■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2023년 적용)

| 공급유형 | | 구분 |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3년 적용)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3인 이하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 |
| 소득 기준 구분 | 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 |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| 100% 이하 | ~6,509,452원 | ~7,622,056원 | ~8,040,492원 | ~8,701,639원 | ~9,362,786원 | ~10,023,933원 |
| | |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| 100%초과 ~ 120% 이하 | 6,509,453원~ 7,811,342원 | 7,622,057원~ 9,146,467원 | 8,040,493원~ 9,648,590원 | 8,701,640원~ 10,441,967원 | 9,362,787원~ 11,235,343원 | 10,023,934원~ 12,028,720원 |
| | 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 |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| 100%초과 ~ 140%이하 | 6,509,453원~ 9,113,233원 | 7,622,057원~ 10,670,878원 | 8,040,493원~ 11,256,689원 | 8,701,640원~ 12,182,295원 | 9,362,787원~ 13,107,900원 | 10,023,934원~ 14,033,506원 |
| | |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| 120%초과 ~ 160%이하 | 7,811,343원~ 10,415,123원 | 9,146,468원~ 12,195,290원 | 9,648,591원~ 12,864,787원 | 10,441,968원~ 13,922,622원 | 11,235,344원~ 14,980,458원 | 12,028,721원~ 16,038,293원 |
| 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 | |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| 14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| 9,113,234원~ | 10,670,879원~ | 11,256,690원~ | 12,182,296원~ | 13,107,901원~ | 14,033,507원~ |
| | |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| 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| 10,415,124원~ | 12,195,291원~ | 12,864,788원~ | 13,922,623원~ | 14,980,459원~ | 16,038,294원~ |

- 기준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 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
- 상위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- 추첨제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661,147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(가구원수 산정 기준)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.
- ※ (월평균 소득산정 대상)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(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 부양) 포함). 단, 세대의원인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
- ※ (월평균소득)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.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(수입금액)을 근로기간(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)으로 나누어 산정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(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)으로 나누어 산정.

■ 자산보유기준(소득기준 초과자)

| 구분 | 자산보유기준 |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|
| 부동산 (건물+토지) | 3억3,100만원 이하 | 건축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주택 |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| 주택 외 | |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
| | 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|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외 | |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토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•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[2023.09.01(금)]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※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「직인날인」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(단,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발급의 경우 제외)
-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■ 신혼부부 소득입증 제출서류

| 해당자격 | | 소득입증 제출서류 | 발급처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| 일반근로자 | 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및 휴직목적등의 휴직사실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휴복직증명서 제출) ② 20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2022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) | - 해당직장 - 세무서 |
| |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| ① 재직증명서 ② 2023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③ 직장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| - 해당직장 |
| | 전년도 전직 (이직) 근로자 | ① 재직증명서 ② 2022년도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| - 해당직장 |
| | 일용직 근로자 | ①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, 소득금액 증명원 ② ①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(금년도 신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한함) -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(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된 경우에만 인정) ③ ①, ②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※ 회사 직인 날인 필수(금년도 신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한함) | - 해당직장 - 국민연금공단 |
| 자영업자 |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| - 전년도 (2022년)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 | - 세무서 |
| | 신규사업자 | - 사업자등록증 -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(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된 경우에만 인정) -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| - 국민연금관리공단 - 세무서 |
| | 법인사업자 | -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 -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재무제표,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| - 세무서 |
|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| | -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 ① 전년도(2022년)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 증명원 ② ①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: 간이지급 명세서 (금년도 신규의 경우에 한함) ③ ①, ②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: 고용근로계약서 (금년도 신규의 경우에 한함) | - 세무서 - 해당직장 |
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| | 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| - 주민센터 |
| 무직자 | | - 비사업자 확인각서(건분주택에 비치) 1)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※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 2)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※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~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 | - 접수장소 |